

#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산업경제위원회  
2000. 2. 18.

###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0년 1월 18일

· 회부일자 : 2000년 1월 18일

다. 상정 일자

○ 제170회 임시회

·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00. 2. 18) 상정, 질의답변, 의결

###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농정국장 김홍기)

가. 제안 이유

순환수렵장의 운영에 따른 수렵장 사용료 징수액의 효율적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사용료중 조수보호관련 사업예산에 계상된 소요액을 제외한 전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하므로써 연차적 계획에 의한 야생조수보호사업 추진을 위함

나. 주요 골자

- 수렵장 사용료의 적립금조항 신설
  - 운영기금 조성
  - 운영기금의 적립 및 관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유해영)

- 순환수렵장사용료를 조수보호관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 기금의 조성 및 운영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고 필요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제정하여야 하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생 략 ”

##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다음에 제6조의2, 제6조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운영기금 조성)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수렵장 사용료는 조수 보호및수렵에 관한법률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야생조수보호사업 기금(이하 “운영기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한다.

제6조의3(운영기금의 적립 및 관리) ① 수렵장 사용료 징수액중 당해년도의 조수보호관련사업 예산에 계상된 소요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립한다.

② 운영기금은 별도 계좌를 설정하여 적립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0. 2. 18

제 출 자 : 유 동 찬 의원

### 1. 수정이유

- 수렵장 사용료를 조수보호관련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금의 성격이 아닌 적립금으로 적립 관리하기 위함

### 2. 주요 골자

- 수렵장사용료등의 수입금을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적립금으로 관리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 (사용료등 수입금의 적립 및 관리) 수렵장 사용료등의 수입금은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 관리한다.

안 제6조의3을 삭제한다.

##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사용료) 생략	제6조(사용료) <현행과 같음>	제6조(사용료) <현행과 같음>
<신설>	제6조의2 (운영기금 조성) 순환수렵장 운영에 수 렵장 사용료는 조수보 호및수렵에 관한 법률 제1 3조제6항의 규정에 의 한 야생조수보호사업기 금(이하 "운영기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한다.	제6조의2 (사용료등 수입 금의 적립 및 관리) 수 렵장 사용료등의 수입 금은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적립금 으로 적립 관리한다.
<신설>	제6조의3(운영기금의 적 립 및 관리) ①수렵장 사용료 징수액 중 당해 연도의 조수보호관련 사업예산에 계상된 소 요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립한다. ②운영기금은 별도 계 좌를 설정하여 적립한 다.	<삭제>